

[별표 6의7] <개정 2013.2.23>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9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2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012. 1. 1. 부터 2017. 12. 31. 까지
24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8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